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업무 추가 〉
■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301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업무 추가	2

I. 개요

1.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530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소병훈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5. 12. 16.
- (3) 회 부 일 : 2025. 12. 1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배분,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관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그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나 인력 등에 따라 지역별 복지서비스의 격차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입법취지가 충실히 구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로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교육 및 자문,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서비스 수준 평가 지원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센터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안정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업무 추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에 지역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자문, 지역사회보장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을 추가하고, 이를 각 호를 통해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u>시·도 및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 현황 분석,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운영</u> 할 수 있다.	제46조(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① ----- <u>다음 각 호</u> ----- ----- ----- ----- ----- ----- <u>운영할</u> ----- -----.
<신설>	1. <u>지역사회보장 추진 현황 분석</u>
<신설>	2. <u>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u>
<신설>	3. <u>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u>
<신설>	4. <u>지역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에</u>

현행	개정안
<u><신설></u>	<u>대한 교육 및 자문</u>
<u><신설></u>	<u>5. 지역사회보장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u>
<u><신설></u>	<u>6. 지역사회보장의 수준 평가 및 공시 지원</u>
<u><신설></u>	<u>7. 그 밖에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u>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46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업무로는 시·도 및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 현황 분석,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보장 전달 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보장 수급 분석 및 지역사회 보장지표 개발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법령 상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6조(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 및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 현황 분석,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운영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도 및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현황 분석
2.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이행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제7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지표(이하 이 조에서 “지역사회보장지표”라 한다) 등 사회보장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
4.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의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보장 수급 분석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개발
7. 그 밖에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는 3년마다 입찰을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되고 있고, 2016년 이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위탁 수행중이며, 그 규모는 연간 약 3억원의 예산과 11명의 인력임.

□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안정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간 복지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들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하여 규정하는 한편,

‘지역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자문’, ‘지역사회보장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역사회보장의 수준 평가 및 공시 지원’, ‘그 밖에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의 업무를 추가로 규정하려는 것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지역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의 경우,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우려되고, 한정적인 인적·물적 자원을 주요 업무에 집중시키지 못하게 하는 측면이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제10조¹⁾에서는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훈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1) 「사회복지사업법」

제10조(지도·훈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인권교육 등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기관이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및 지방자치단체 인재원 등이 교육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이행·평가, 지역 간 격차 분석, 통계 및 지표 개발 등 지역 단위 사회보장체계 전반을 대상으로 한 거시적·전략적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지역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자문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는 것은 센터의 정책 지원·분석 중심의 역할과 조화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둘째, ‘지역사회보장의 수준 평가’의 경우,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305)²⁾을 통하여 신설되는 사회복지교부세의 교부기준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평가 가능성 및 객관성·공정성 확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지역사회보장이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단위에서 작동하는 사회보장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의료·돌봄, 노인·장애인·아동·청소년·여성 등 대상별 사회보장서비스의 충분성 및 접근성과 이러한 서비스가 지역 여건에 맞게 연계·조정되는 전달체계의 구조와 기능, 재정·인력·시설 등 보장 인프라의 수준 등을 의미하므로,

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305)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② 교부세의 종류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사회복지교부세: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 + 제5조제3항제1호의 내국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 × 1만분의 94

제9조의2(사회복지교부세의 교부) ① 사회복지교부세는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 따른 사회복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지방세 운영상황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서비스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에 대한 평가는 지역 간 격차와 균형발전 여부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체계가 얼마나 종합적·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시적 평가로 이해할 수 있고, 이를 수행하는 것은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나아가 사회복지교부세 교부 기준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가 담보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사회보장기본법」³⁾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를 통해 관련 행정데이터를 분석·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향후 지역사회보장 수준 평가를 추진하게 된다면 이러한 기존 제도 및 데이터 분석 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사회보장기본법」

제32조(사회보장통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이하 “사회보장통계”라 한다)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회보장통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 요청) ① 위원회는 사회보장 정책의 심의·조정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회보장 행정데이터가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제공을 요청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각 호 생략)

제43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2조에 따라 제공받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원활한 분석, 활용 등을 위하여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그간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사회보장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함.

다만, 지역사회보장의 수준 평가 및 공시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보장계획 평가 체계와 맞추어 복지부는 시·도를 평가(시·도는 시·군·구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또한, 평가의 시행을 위해 센터의 예산·인력 확보, 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시행시기(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세부 기능은 정책·평가체계 변화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영역으로, 법률에 상세 업무를 고정할 경우 향후 반복적 개정 필요성이 증가될 우려가 있음.

‘지역사회보장의 수준 평가 및 공시 지원’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2215305)에서 사회복지교부세의 교부기준에 ‘사회보장 서비스 평가 결과’를 고려하도록 하는 취지와 연동되는데, 평가의 범위, 절차, 자료 검증, 이의제기 등이 법률상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능을 상향할 경우, 교부기준의 자의성 논란 및 지자체 이의제기·행정쟁송 위험이 확대될 우려가 큼.

문 의 처

02)6788-5497